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97 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 : 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• 전용기 • 김경만

박성준 • 윤후덕 • 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실내·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체육활동을 위한 국민 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.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체육시설 이 용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 속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제2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체육시설 안전관리에	제4조의2(체육시설 안전관리에
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) ① (생	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,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체육시설의 감염병에 대한
	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
	<u>사항</u>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